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2037534(본소), 2021나20375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2037534(본소), 2021나2037541(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20 선고 2018가합7750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근

피고(반소원고) 겸 피고(반소원고) C의 보조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하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2. C

피고, 피항소인D교회

피고(반소원고 포함)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방종합

담당변호사 최영준

변론 종결2022. 12. 8.

판결 선고2023. 1. 19.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20. 선고 2018가합77503(본소),

2020가합76497(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가 변경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C이 변경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42,505,799원 및 그중 319,665,799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2021. 8. 20.까지 연 4.2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2,8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2022. 9. 30.까지 연 4.25%, 그다음 날부터 2023. 1. 19.까지 연 5.7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D교회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피고(반소원고) C의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45%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피고 C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936,5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 소멸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는 담보권 소멸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담보권 소멸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593,053,777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D교회는 원고에게 593,053,777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1. 피고 C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 C에게 315,24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 C은 반소 청구취지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B, C

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B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B의 보조참가신청 이유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936,5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1)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 소멸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법상 지위가 이전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공동소송인인 피고 C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가 정하는 보조참가라 함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한 쪽을 승소시킴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 B가 피고 C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신청을 하면서 그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히는 위와 같은 소송(본소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71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B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 B가 본소 청구취지 제2항 중 피고 C 부분, 즉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C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가정적으로 이를 검토해 본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게 이 부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친다거나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 B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위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쓰고(삭제 포함),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4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및 당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특히 3.의 다.항)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3. 고쳐쓰는 부분

가.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의 변경을 반영한 부분

○ 본소의 청구원인 변경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10면 9, 10행의 "주위적으로 양도담보권 소멸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를 "양도담보권 소멸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로 고쳐쓴다.

○ 반소의 청구취지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17면 마지막행의 "544,309,381원"을 "539,229,381원"으로, 18면 2행의 "272,154,192원"을 "269,614,690원"으로 각 고쳐쓰고, 22면 2, 3행의 "(피고 C은"부터 22면 5행의 "인정하지 않는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나. 위 가.항 이외의 부분으로서 당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

○ 제1심 판결 11면 7, 8행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를 "원고와 피고 B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22면 마지막행의 "E은"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25면 14, 15행의 "한편 원고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를 "한편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교회가 아니라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로 고쳐쓴다.

다. 위 가.항 이외의 부분으로서 당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10면 18행, 15면 13행의 각 "80,018,086원"을 "88,018,086원"으로, 15면 13, 14행의 각 "35,053,777원"을 "43,053,777원"으로 각 고쳐쓰고, 10면, 11면의 각주 2)를 삭제한다.2) ○ 제1심 판결 15면 3행의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부터 8행의 "대출이자율 4.25%로 인정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약정이자율 관련).

『갑 제40, 87, 8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3개월 변동금리로서 2019. 9. 1.부터 2022. 11. 30.까지 대출이자율이 3.85%~5.71%로 수차례 변동되었고, 2020. 10. 26. 당시 대출이자율은 연 4.25%이며, 2022. 10. 1.부터 2022. 11. 30.까지의 대출이자율은 연 5.7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2. 12. 1. 이후 변동된 금리에 대한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다. 그리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대출이자율의 변동 추이와 계산의 편의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2019. 9. 1.부터 2022. 9. 30.까지의 약정이자율은 연 4.25%로, 2022. 10. 1.부터의 약정이자율은 연 5.71%로 각 인정한다』

○ 제1심 판결 22면 14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소멸시효 관련).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손익분배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손익분배비율은 토지의 지분 보유 비율과 마찬가지로 50:50으로 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이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1/2 상당액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H빔 설치공사와 관련한 29,680,000원(피고 B, C의 2021. 6. 3.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목록 2 표 중 순번 233, 234번) 부분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검토하건대, 피고 C이 2006. 6. 2. 이전에 위 29,6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10. 19. 피고 C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29,680,000원 부분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11. 23. 원고가 피고 C이 있는 자리에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원고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인 피고 C에게 2006. 6. 2. 이전에 지출된 위 29,680,000원에 해당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이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최종적인 비용인 509,549,381원(지출 비용 539,229,381원 - 시효소멸 부분 29,680,000원) 중 1/2인 254,774,69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24면 6행부터 25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소결 부분).

『가) 결국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출금 730,000,000원에서 피고 C이 원고를 대신하여 P에 변제한 180,000,000원을 뺀 나머지 55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 C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자 43,053,777원 합계 593,053,777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9. 9.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종 공사대금 중 1/2 상당액인 254,774,690원 및 그에 대하여 피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9. 11. 4. 자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1. 6.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C이 위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11. 4. 자 반소장 부분이 그다음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9. 11. 5.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비록 피고 C이 2020. 10. 19. 이 사건 반소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6497) 2020. 10. 20. 위 2019. 11. 4. 자 반소(위 고양지원 2019가합76897)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상계항변까지 철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이자 47,280,489원[=43,053,777원 +4,226,712원(=550,000,000원에 대한 2019. 9. 1.부터 2019. 11. 5.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4.25%로 계산한 이자)]과 원금 207,494,201원(=254,774,690원 -47,280,489원)은 피고 C의

정산금 채권 254,774,690원과 순차로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C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42,505,799원(=550,000,000원 - 207,494,201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이 인정한 319,665,799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9. 11. 6.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4.2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나머지 22,840,000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9. 11. 6.부터 2022. 9. 3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4.25%, 그다음 날인 2022. 10.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5.7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양도담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부부는 2004. 11. 2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부부가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160,000,000원의 차용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 B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936,5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 소멸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7. 피고 B 앞으로 201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토하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12면 1행부터 14면 9행까지 부분에서 실시된 여러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달리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B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공동)매수인이라는 점에 들어맞는 처분문서인 2012. 2. 10. 자 매매계약서(매도인 H, 매수인 원고와 피고 B)는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양도담보 주장에 들어맞는 양도담보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와 원고의 남편 E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2010. 7. 15. 자 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상 매수인 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모두 (피고 B가 아닌) E만의 것임을 들어, 위 2010. 7. 15. 자 매매계약서가 양도담보 주장에 들어맞는 처분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양도담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두고 채무이행이 있을 때에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로 약정하는 것인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수인 란의 정보가 E의 것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2010. 7. 15. 자 매매계약서가 양도담보에 직접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2010. 7. 15. 자 매매계약서에 양도담보에 들어맞는 기재 내용(피담보채무의 내용 등)을 찾을 수도 없다.

나) 원고의 남편인 E은 2012. 4. 17. H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2012. 3. 26. 자로 토지 소유권이 원고와 피고 B에게 이전되어, 2004. 11. 26. 자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6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물론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갑 제33호증)에는, AB이 'E이 돈을 빌리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AC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2010. 7. 1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불기소결정서에는, AD이 '2010. 7. 15. 자 매매계약서는 허위이다. E은 AC 지분이 양도담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시적인 확인서 등이 없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다른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갑 제8호증)에는, 원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남편 E이 토지(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아 교회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교회 전도사인 피고 B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2010. 7. 15. 자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그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처분문서인 2012. 2. 10. 자 매매계약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임)의 존재 및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원고의 양도담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AE의 증언은, [위 가), 나), 다)항의 여러 사정에 더하여] 대부분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 점(이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제1심 증인 T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문서의 내용에도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 C의 조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 식당 영업 등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는 민법 제703조가 정하는 조합에 해당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동업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재산분배청구의 성격을 가지는데, 위 동업관계에 잔존 채무가 남아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교회 매수를 위한 자금 대여를 요청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에서 대출받은 73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C이 P에 직접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자를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위 730,000,000원에서 원고 자신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대출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관여할 수 없었고, 피고 C이 자신의 판단 아래 위 대출금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을 제1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동업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재산분배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B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피고 교회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경한 본소 청구와 피고 B, C이 변경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백숙종

판사유동균

- 1)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토지를 가리킨다(이하 같다).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와 이 사건 토지의 각 면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의 표현 방식에 따라 편의상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 2) 원고의 2022. 1. 19. 자 준비서면 2, 3면 등 참조